

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91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. . .
제출자 : 안산시장

개정이유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2항 및 「안산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24조에 따른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따라 「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 녹화심의위원회를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와 통·폐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제5장 녹화심의위원회 장 구분을 삭제함.
- 나. 녹화정책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36조).
- 다. 녹화심의위원회 통·폐합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37조, 제38조, 제39조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

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도시공원위원회)
 -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,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·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군에 시·군 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8. 5.08. ~ 2008. 5.28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안산시 녹화심의위원회 폐지 검토보고(2008.04.25.)

의안번호	제호
의결(보고) 년 월 일	2008. 6. . (제 회)

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출자	주민생활지원국장
제출년월일	2008.05. .

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□ 개정이유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2항 및 「안산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24조에 따른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따라 「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 녹화심의위원회를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와 통·폐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제5장 녹화심의위원회 장 구분을 삭제함.
- 나. 녹화정책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36조).
- 다. 녹화심의위원회 통·폐합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37조, 제38조, 제39조).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

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도시공원위원회)
 -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,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·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군에 시·군 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8. 5.08. ~ 2008. 5.28.(2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

- 안산시 녹화심의위원회 폐지 검토보고(2008.04.25.)

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장 구분 중 “제5장 녹화심의위원회”를 삭제한다.

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6조(심의) 녹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안산시 도시공원 조례」에 따른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
1. 제3조 규정에 의한 녹지의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3. 제14조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4. 제33조 규정에 의한 보호수·보호수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도시녹화에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위원회의 폐지 등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안산시 녹화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,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푸른녹지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푸른녹지과장 이 성 운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녹지정책담당 김 운 학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운 학 (행정 2325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 5 장 녹화심의위원회 <p>제36조(녹화심의위원회) ①녹화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화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둈다.</p> <p>1. ~ 4.(생략) 5. 기타 시장이 도시녹화에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.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종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의원 2인 2. 도시교통국장 3. 산림, 임업 및 자연환경 또는 도시녹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4.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인 <p>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<삭제></p> <p>제36조(심의) 녹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안산시 도시공원 조례」에 따른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</p> <p>1. ~ 4.(현행과 같음) 5. 그 밖에 시장이 도시녹화에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
제37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	<p><삭제></p>
제38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<p><삭제></p>
제39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.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	<p><삭제></p>